

『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0월 9일

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 입지 공개모집 때 약속한 입지 결정지역 구미시 산동면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(안 제2조 및 제3조)
 - 기금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
 - 존속기한은 면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함
- 기금의 용도 (안 제4조)
 - 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, 면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, 면 발전협의회의 운영비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
- 기금의 운용·관리 (안 제5조)
 - 면 발전협의회에 위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(안 제6조)
 -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에서 대행함
 -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명,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면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
- 위원회의 기능 (안 제7조)
 - 기금운용계획(변경)안 및 결산보고서안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구미시 공고 제2004-616호(2004.12.21) :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공개모집 때 공고한 사항으로 유치면(面)에 지원 약속된 사항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 공개모집 시 약속한 입지결정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 내용은

-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규정(안 제2조 및 제3조)
출연금,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소멸한다고 정함
- 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, 면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지원
- 기금의 운용·관리(안 제5조)
면 발전협의회에 위탁,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(안 제6조)
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「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에서 대행토록 함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의 환경자원화시설(매립·소각)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본 조례 관련 2008년도 예산지원계획은 40억원이며, 2009년도에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